

정 관

2013. 08. 23. 제 정
2014. 05. 15. 제 1 차 개정 [1]
2015. 10. 01. 제 2 차 개정 [2]
2016. 03. 30. 제 3 차 개정 [3]
2017. 01. 25. 제 4 차 개정 [4]
2017. 05. 24. 제 5 차 개정 [5]
2018. 05. 29. 제 6 차 개정 [6]
2019. 03. 27. 제 7 차 개정 [7]
2019. 12. 12. 제 8 차 개정 [8]
2021. 03. 26. 제 9 차 개정 [9]
2022. 03. 30. 제 10 차 개정 [10]
2023. 03. 30. 제 11 차 개정 [11]
2024. 03. 29. 제 12 차 개정 [1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루닛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Lunit Inc.”(으)로 표기한다. [2][4]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시각 데이터 (이미지/비디오)를 활용한 기술 개발 및 서비스업
2. 이미지에 기반한 상품 검색 솔루션 개발, 제조, 유통, 자문, 유지보수 및 서비스업
3.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자문 및 유지보수업
4.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5. 의료용기기 제조, 판매, 수입, 임대 및 수리업
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8. 정보서비스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업
9. 모바일 비즈니스업 [9]

10. 컨텐츠 개발업 [9]
11. 하드웨어 및 주변기기 판매업 [9]
12. 기술용역업 [9]
13.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9]
14.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유통업 [9]
15. 부동산 개발, 공급 및 임대업 [9]
16. 식음료 등 판매업 및 카페운영업 [11]
17. 각 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18. 각 호에 관련된 도소매, 수출입 및 수출입 대행업
19.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unit.io)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 신문에 게재한다. [2]

제 2 장 주식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4][9][11]

제 6 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6]

- ① 회사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3 범위 내로 한다. [7]

- ④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제 8 조의 2 (배당우선주식) [6]

- ① 회사는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 연 1% 이상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현금으로 배당한다. [7]
- ③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④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액을 지급한 이후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우선주식은 보통주식과 동등하게 참가하여 잔여이익을 배당받는다.
- ⑤ 회사는 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써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존속기간 만료일 전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한다.
- ⑥ 회사가 수 차례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제1종, 제2종, 제3종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구분하며, 이를 배당우선주식 간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권은 동등한 순위로 한다.
- ⑦ 회사의 신주 발행 시 배당우선주식에 배정하는 신주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하며,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⑧ 배당우선주식의 기타 내용 및 조건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 8 조의 3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 [6]

- ① 회사는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은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회사의 잔여재산은 동산, 부동산, 지식재산권 등으로서, 청산인이 이를 현금으로 환가한 후 분배하기로 한다.
- ② 회사의 청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 및 그 주식이 제8조의2에 따른 배당우선주식에 해당할 경우 분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현금으로 분배한다. [7]
- ③ 회사의 청산 시 잔여재산이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전부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소유하는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 ④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지급한 이후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은 보통주식과 동등하게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는다.
- ⑤ 회사가 수 차례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제1종, 제2종, 제3종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구분하며, 이를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 간에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권은 동등한 순위로 한다.

- ⑥ 회사의 신주 발행 시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에 배정하는 신주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하며,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의 기타 내용 및 조건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 8 조의 4 (전환주식)

- ① 회사는 제8조의2에 따른 배당우선주식 및/또는 제8조의3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해당 우선주식을 주주가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전환주식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 주식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전환조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③ 전환주식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④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⑤ 전환주식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를 준용할 수 있다.
- ⑥ 회사의 신주 발행 시 전환주식에 배정하는 신주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하며,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전환주식의 기타 내용 및 조건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 8 조의 5 (상환주식) [6]

- ① 회사는 제8조의2에 따른 배당우선주식 및/또는 제8조의3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해당 우선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이하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주주가 상환을 청구한 상환주식을 상환하기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각 주주가 소유하는 상환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를 상환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연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7]
- ④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이 연장된다.
 1.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청구가 있었으나 상환주식이 상환되지 못한 경우
 2. 상환주식에 대한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 ⑤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 주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회사의 신주 발행 시 상환주식에 배정하는 신주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하며,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상환주식의 기타 내용 및 조건은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 9 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7]
 - 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3.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1 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8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 4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 6.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7.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8.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9.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때 신주인수권 부여한도 및 행사가격 등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 (주식의 발행가격)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또는 액면이상의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그 발행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1 조 (신주의 동등배당) [10]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 11 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3]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 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의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9]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주식의 권리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⑦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⑪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거나 교부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의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9]

- ① 회사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거나 교부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 조 (명의개서 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9]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9]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9]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7] [9] [11]

-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할 수 있다. [9] [11]
-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9] [11]

제 13 조의 2(주주명부 작성 · 비치) [9]

-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4 조 (사채모집)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 ② 사채의 종류는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종으로 한다.
- ③ 사채의 총액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9]

제 15 조 (수탁회사)

사채모집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수탁회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 16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7]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9] [12]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9] [12]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9][12]
 4.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9] [12]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

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 17 조 (신주인수권부사채)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7]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9] [12]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9] [12]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9] [12]
 - 4.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9] [12]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 18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9]

제12조(명의개서 대리인)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9 조 (소집시기)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 20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 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9]
-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9]
-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 22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3 조 (주주총회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4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5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6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

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7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의 3일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8 조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30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 · 이사회

제 31 조 (이사의 원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 32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4 조 (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 임기와 같이 한다.

제 35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이사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갖는 이사를 정할 수 있다.

제 36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사장)는 당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사장)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 ② 회장 또는 부회장은 대표이사(사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사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 ④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다른 대표이사나 위 제3항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7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2]

제 38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2]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9]

제 39 조 (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7]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

석한 것으로 본다.

제 40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7]
-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1 조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2]

제 42 조 (위원회) [10]

-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2]
 1. 보상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감사위원회 [12]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12]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2]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3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7]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3 조의 2 (이사의 책임) [12]

- ① 이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
- ② 전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법률상 이사의 책임감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12]
- ④ 이사가 본 회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

실에 의한 임무 위배로 발생하거나, 그 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제 44 조 (상담역 및 고문)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상근하지 아니하는 상담역이나 고문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12]

제 45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12]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2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12]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12]
-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12]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9] [12]
-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9] [12]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12]
-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제 45 조의 2 (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12]

- ① 제45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12]
-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12]

제 46 조 삭제 [12]

제 47 조 삭제 [12]**제 48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12]**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12]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12]
-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자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12]
- ④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12]
-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9] [12]
-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9] [12]
-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자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9] [12]
- ⑧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7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12]
- 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12]

제 49 조 (감사위원회의 감사록) [12]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2]

제 50 조 삭제 [12]**제 7 장 계 산****제 51 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2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배치 등) [7]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

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 주주총회 회의일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사장)가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2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9]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2]

제 53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9]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4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또는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4 조의 2 (분기배당) [9]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 19 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55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되지 않은 때에는 당 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③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8 장 기 타

제 56 조 (업무규정)

이 회사는 업무의 수행 및 기타 경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다.

제 57 조 (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2013. 8. 23.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발기설립(發起設立)의 경우에는 상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 2 조 (최초의 영업년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는 회사 설립년월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의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상호), 제4조(공고방법), 제61조(해산)의 변경 또는 신설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2014. 5. 15.자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에 의해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식 2,223주는 이 정관 제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전환상환우선주식으로 본다.

부 칙(2016. 3. 30.)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5. 29.) [6]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7.) [7]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12.) [8]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26.) [9]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2조 제3항, 제13조의2,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제 2 조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적용)

관련법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22. 3. 30.) [10]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30.) [11]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3. 29.) [12]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